|  |  |  |
| --- | --- | --- |
|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일부 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  총국 령 제166호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일부 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이 2015년 7월 10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5년 8월 25일  국무원의 행정심사인허가 사항 취소, 이관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국가질검총국은 유관부문의 규정을 정비하고 아래의 6개 부문규정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6. <유기제품 인증 관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제1항을 “유기제품인증기구(이하 ‘인증기구’)는 법에 따라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아울러 국가인감위의 승인을 거친 후에야 승인된 범위 내에서 유기제품인증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이 결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关于修改部分规章的决定**  总局令第166号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关于修改部分规章的决定》已经2015年7月10日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局 长  2015年8月25日    根据国务院取消、下放行政审批事项的决定，国家质检总局对有关部门规章进行清理，决定对以下6件部门规章的部分条款予以修改：  六、对《有机产品认证管理办法》作出如下修改：  将第七条第一款修改为：“有机产品认证机构（以下简称认证机构）应当依法取得法人资格，并经国家认监委批准后，方可从事批准范围内的有机产品认证活动。”  本决定自公布之日起施行。 |